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」 -

## 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22. 11.

2. 발의자: 최홍린 의원(대표발의)

### 3. 제안이유

-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,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구청장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 
(안 제5조 ~ 안 제7조)
-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안 제11조)

### 5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- 관계법령 :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, 제7조, 제8조  
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5조, 제16조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
## 6. 검토의견

-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은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어린이안전법)에 따라 달서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,
- 입법의 필요성, 상위법령 저촉 또는 중복 여부, 과도한 재정 또는 행정력 부담 여부 및 법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,
- 이 조례안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책무(조례 안 제3조),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의 수립(조례 안 제4조)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와 조치(조례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, 어린이 안전교육(조례 안 제8조)에 대해서, 상위법령인 「어린이안전법」에서 정한 '지방자치단체의 장'의 수행에 대한 사항 등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